

산불예방 안내

산에 가실 때 주의하실 사항

- 성냥,ライター, 버너 등 화기물을 휴대하지 맙시다.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야영·흡연을 하지 맙시다.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주의하실 사항

-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영농부산물(낙엽, 폐기물), 생활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지 맙시다.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의 소각은 불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 산림청 산불대책본부(042-481-4119), 시·군·구, 국유림관리소 등 산림행정관서
- 119, 경찰서, 군부대 등에 신속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산불가해자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최초 제보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불 관련 처벌 내용

- 산림방화죄
 - 타인소유의 산림이나 보호구역·보호수에 방화한 자 : 7년 이상의 징역
 - 자기소유의 산림에 방화한 자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 불이 타인소유의 산림까지 확산되어 피해를 입힌 때 :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산림에 실수로 산불을 낸 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
- 과태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화기 또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간 자, 산림 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행위를 하거나 산림 안에 담배꽂초를 버리는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료제공 : 산림청 산불방지과 ☎ 042-481-4255~6